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남인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647
----------	-------

발의연월일 : 2025. 11. 27.

발 의 자 : 남인순 · 오세희 · 용혜인
서영석 · 허종식 · 박 정
이수진 · 김남희 · 송재봉
손명수 · 전용기 · 김 윤
이해식 · 박홍근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정지시키고 시험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국가시험 등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는 타법의 규정과 달라 보건의료 관련 직종 간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도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제한을 세분화하여 상시로 실시되는 시험인 점을 고려하여 12개월의 범위에서 응시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자격시험”을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중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자격시험”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③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④ 시·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자격시험의 응시를 12개월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57조제2호의2 중 “제39조의2제6항”을 “제39조의2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의3 중 “제39조의2제7항”을 “제39조의2제9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생략)	제39조의2(요양보호사의 직무·자격증의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요양보호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9조의3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교육하는 기관(이하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과정을 마치고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 ----- ----- ----- ----- -----자 <u>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u> -----.
<신설>	③ <u>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이나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u>
<신설>	④ <u>시·도지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시험에 응시한 사람 및 자격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부정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u>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제39조의13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격증을 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과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 또는 재교부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요양보호사의 교육과정,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실시 및 자격증 교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교부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

자격시험의 응시를 12개월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⑤ -----
자격시험-----

-----.

-----.

⑥ -----
자격시험-----

-----.

⑦ -----자
격시험-----

-----.

⑧ 제5항-----

니 되고, 누구든지 그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⑦ 누구든지 제6항에 따라 금지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2의2. 제39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자 2의3. 제39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것을 알선한 자 3. ~ 6. (생략)	----- -----. ⑨ -----제8항----- ----- -----. 제57조(벌칙) -----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9조의2제8항----- ----- ----- 2의3. 제39조의2제9항----- ----- ----- 3. ~ 6. (현행과 같음)
--	--